

의안번호	제422호
의결연월일	2017. 11. 1

-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0. 26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17. 10. 26

다. 상 정 일 자 : 2017. 11. 1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총무과장 : 인 영 환]

가. 제안이유

-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마을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통신요금 지원 조항 신설(안 제4조 제3항)

3. 검토보고요지 [전문위원 : 복 준 수]

- 본 조례안은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실비지원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